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14.1.1시행)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Q&A

2013. 12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순서

I.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개요	1
1. 배경	1
2. 야간작업 종사자 규모	2
2. 야간(교대) 작업의 건강영향	3
II. 야간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요내용	4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야간작업’을 추가	4
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결과 판정	4
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6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	10
5.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	10
6. 시행일 및 경과조치	13
III. 야간근로 특수건강진단 관련 Q&A	14
IV. 참고자료	27
<붙임1> 근로자건강진단 업무편람	27
<붙임2>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42
<붙임3>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예규)	66

1) 배경

-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
 - 국제암연구소가 교대근무를 발암 추정요인으로 분류('07.12)한 것을 계기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악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우리나라 야간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11%* 정도이나, 서비스 업종(편의점 등)의 24시간 영업 증가로 더욱 증가할 전망
 - * '1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 야간작업종사자는 127만명으로 추정
 - 따라서 야간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악화 및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
-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대 근무 개편 등 작업관리를 통해 야간작업을 줄이는 것이나
 - 공공부문 및 장치산업 등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영역이 상존하므로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대상에 포함

【야간(교대) 근로의 건강영향(문헌고찰)】

- '교대근무'는 생체 일주기 리듬의 파괴, 멜라토닌 분비감소, 수면 부족, 불건강 행동 요인 등의 증가를 가져옴
 - 따라서 '교대근무군'은 '낮근무군' 보다 업무상 사고, 심혈관질환, 수면장애, 소화기질환 및 유방암 등의 발생위험이 높음

2) 야간작업 종사자 규모 및 형태

- 약 127만명~134만명으로 추정(전체 근로자의 10.2~11.2%)

< 야간작업 종사자 규모(추정) >

구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0년)		노동패널조사('08년)	
	명	%	명	%
야간작업 종사자	1,271,522	11.2	1,337,737	10.2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근로자 1인 이상 민간부문의 전사업
- ▲ 노동패널조사: 우리나라 도시거주가구 15세 이상 개인
- * 조사형태별로 표본추출방식, 목표모집단, 가중치 부여방식, 조사변수 등이 달라 추정치의 차이가 존재

- (연령¹⁾) 야간작업 종사자는 전 연령대에 걸쳐 분포하지만 특히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군의 비율이 높음

* 55세 이상 전체근로자 중 17.0~18.3%(22만~30만명)가 야간작업 종사자임

- (성별) 남성근로자는 92만~99만명(12.6~13.2%), 여성근로자는 34만명(6.6~7.9%)이 야간작업을 수행
- (업종별) 종사자 수는 제조업(약 45만6천명), 운수업(20~24만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13만명) 순으로 많고,
 - 종사자 비율은 운수업(35.9~39.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15.7~15.9%), 제조업(15.1~15.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직종별)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39만~63만명)가 가장 많고, 단순노무 종사자(24만~29만명), 전문가(14만~17만) 순으로 많음
- (규모별) 300인 이상 사업장(45만명)이 가장 많고, 100~299인(27만명), 50~99인(24만명), 10~49인(27만명), 10인 미만(10만명) 순임

1) 연령, 성별, 업종 및 직종: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및 노동패널조사, 규모별: 노동패널조사

3) 야간(교대) 작업의 건강영향(관련 문헌고찰)

구분	건강영향
업무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 근무군은 업무상 사고의 위험이 최대 2배 증가
심혈관계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근무군은 낮근무군 보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1.4배 높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군 1.5배, 6-10년군 2.0배, 11-15년군 2.2배, 16-20년군 2.8배 증가 심근경색증 및 관상동맥질환 위험은 1.31배 증가 허혈성심장질환 사망 위험이 교대근무군은 2.32배, 고정야간근무군은 1.23배 높음
대사 증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근무군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1.46배 대사증후군 발생률은 교대근무군이 9.0%로, 낮근무자군 1.8%보다 5배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증후군: 한 개인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죽상동맥 경화증 등 여러 가지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
수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근무군에서 입면 어려움 1.7배, 작업중 졸음 2.91배 증가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근무를 경험한 여성의 22.6%, 남성의 13.4%가 우울증이 있었고, 교대근무기간 20년까지 유병률이 지속 증가
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07년 국제암연구소(IARC*)는 교대근무가 생체 일주기 리듬에 장애를 일으켜 결국 인간에게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발표 야간작업과 유방암의 관계에 대한 연구 13편을 분석한 결과, 위험비가 1.48배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 1.51배 위험
소화기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근무는 소화성궤양 발생과 관계된 가스트린 및 그룹 I 펩시노젠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확인 '늦은 야간근무군'에서 소화성 궤양 위험이 2.34배 높음

1)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야간작업」을 추가

-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작업’을 추가하되, 실시대상, 건강관리구분 및 사후관리조치 판정 등은 달리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1. 화학적 인자
 - 가. 유기화합물: 108종
 - 나. 금속류: 19종
 - 다. 산 및 알칼리류: 8종
 - 라.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 마.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13종
2. 분진: 6종
3. 물리적 인자: 8종
4. 야간작업 (신설) ('13.8.6)

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결과 판정

- 현행 건강진단결과 판정과 같이 ①건강관리구분 판정 ②사후 관리조치 판정 ③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으로 구분하되,
 - ‘건강관리구분 판정’과 ‘사후관리조치 판정’은 야간작업 건강 영향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일부 변경
- (건강관리구분 판정) 현행과 같이 정상(A), 질병 요관찰자(C), 유소전자(D)로 판정하되,
 - 야간작업에 의한 건강영향은 직업병과 달리 ‘개인적 요인’과 ‘업무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하므로 직업병(C1,D1)과 일반질병(C2,D2) 구분은 하지 않음
 - 다만 통계 코드의 구분을 위해 C_N, D_N 으로 명명 (야간(Night)작업)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안) >

건강관리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자)
C _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 _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현행 건강관리구분 판정(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제2012-45호)

건강관리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 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 ₁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 ₂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사후관리조치 판정)

- 현행과 같이 사후관리조치 내용을 0~9까지 구분 판정하되, 각 조치별 내용에 야간작업 특성을 반영한 ‘상세내용’을 작성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 ⁽¹⁾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²⁾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3	추적검사 ⁽³⁾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6	작업전환()
7	근로제한 및 금지()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⁴⁾
9	기타 ⁽⁵⁾ ()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C₁), 직업병 유소견자(D₁)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C_N), “야간작업” 유소견자(D_N)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D₁)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 (업무수행적합여부 판정)

- 현행과 같이 업무수행적합여부 판정 실시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야간작업(2종)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별표 12의2]

-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적용 방법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 시간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시간을 충족하면 검진대상이 됨

가. 업무 특성상 야간작업이 포함되는 경우

- 해당 업무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경우 배치전, 6개월 이내(배치후 첫 번째 검진), 12개월마다 실시

예) 병원 임상간호사, 택시운전원, 경비원, 24시간 편의점 직원 등 상시적으로 야간작업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 ②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6개월간 근무결과 야간작업 횟수가 24회이상이거나 야간작업 총시간이 360시간이상(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4호 가목 또는 나목)인 경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

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작업을 한 경우(예)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작업을 1~3월까지 1개월에 4회 미만, 4~6월까지 1개월에 4회이상하여 6개월간 평균 24회이상인 되었다면 배치후 첫 번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므로 대상을 알게된 월로부터 다음 월이내에 실시
- 배치후 첫 번째 검진이후 1년간 누적된 야간작업이 48회 이상되면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

②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를 매월 60시간이상 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간 누적된 시간이 360시간이 된 경우 배치후 첫 번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

- 배치후 첫 번째 검진이후 1년간 야간작업시간 누적이 720시간 이상되면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

지 침 일반건강진단 주기의 개념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그 간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를 전년도 실시일 다음날부터 1년(또는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 실제로 대부분 사업장의 건강진단 담당자나 근로자들이 일반 건강진단 실시주기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 근로자들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님)해 주는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혼란을 겪어 왔음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 ① 건강검진의 실시는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 다만, 2차 검진과 검사항목 선택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위암,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 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항목이 일반건강진단 항목과 유사하므로 동시에 실시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제도의 조기정착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 불규칙한 야간작업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주기가 근무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6개월간 업무를 실시한 후에 야간작업 여부를 판단) 기존 일반건강진단주기에 맞춰 실시하기가 곤란
- ☞ 따라서 일반건강진단 주기를 **회계연도**로 함으로써 일반건강진단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간 사업장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해소

※ **유의점**: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회계연도 개념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시행규칙 제98조 및 제99조, 별표 12의 3]

- 배치전
- 배치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 주기*: 12개월
-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최초 작업 배치 또는 작업 전환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 야간작업 배치 시 특히 건강상 위험이 큰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치 전에 건강상태를 평가
- *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반복성 위궤양 환자 등
- 교대작업 배치 후 '수면장애' 발병 등 부적응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내 첫 번째 검진 실시
- 배치후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후부터는 1년주기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지속 관리
 - 현행 1년마다 실시하는 비사무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5)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

- 야간작업 관련 주요 건강문제인 ①수면장애, ②심혈관질환, ③ 소화기질환, ④유방암을 대상질환으로 하고, 각 질환별 구체적인 검사항목 설정
 - 질환별 검사항목은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

- 1·2차 검사의 세부 검사항목은 질환별 적합한 임상검사 또는 문진으로 구성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시행규칙 제100조 제4항 별표 13]

가. 야간작업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③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위장관계: 위내시경 ④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밑줄친 부분은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임

** 제2차 검사항목 중 일부 검사항목(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위내시경, 유방촬영, 유방초음파)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제4조 제2항관련 별표 2)

○ 대상 질환별 검사항목

- (수면장애) 수면장애의 특성상 1·2차 검사 모두 임상검사 없이 문진을 통해 진단하고, 2차검사는 심층면담을 추가

* 문진표: 1차 검사는 수면장애 여부, 2차 검사는 야간(교대) 근무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구성

수면장애	검사항목
1차 검사항목	○ 불면증 증상 문진 - 불면증지수 검사(Insomnia severity index, ISI)
2차 검사항목	○ 심층면담 및 문진 - 주간 졸림증 검사(Epworth sleepiness scale, ESS) - 수면의 질 검사(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 심층면담은 우울증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수면장애인지 여부 등을 파악

- **(심혈관질환)** 1차검사는 현행 일반건강진단 항목으로 평가*하고, 2차 검사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누어 실시

*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심혈관질환 검사항목이 기 포함

** 선택항목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함께 실시

심혈관질환		검사항목	비고
1차 검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부둘레 측정 ○ 혈압 측정 ○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일반검진 1차 검사항목에 포함
2차 검사항목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압 측정 ○ 공복혈당 ○ 당화혈색소(HbA1c) ○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일반검진 2차 검사항목은 혈압측정, 공복혈당만 포함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심전도 ○ 24시간 혈압 측정 	

- **(소화기질환)** 문진을 통해 위장장애 여부를 평가한 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

소화기질환	검사항목
1차 검사항목	○ 관련 증상 문진: 기능성 위장장애 검사
2차 검사항목(선택)	○ 위내시경

- **(유방암)** 1차로 문진을 실시하고, 의사 판단에 따라 2차 검사(유방촬영, 유방초음파)를 선택적으로 실시

* 젊은 여성의 경우 유방촬영 등을 자주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판단토록 함

유방암	검사항목
1차 검사항목	○ 관련 증상 문진
2차 검사항목(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촬영 ○ 유방 초음파

6)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추가되는 건강진단 대상인원(약130만명, 노동패널조사 기준), 진단인력 및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
 - 시행일('14.1.1)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 ※ 규모별 적용 기준은 단위사업장으로 적용함
-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최초의 진단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과 중복되는 항목이 많아 당해년도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경과규정을 둠

- 시행일 이후 부터는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 배치후 첫 번째(6개월 이내), 이후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대상>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업종, 직종 및 업무에 상관없이 야간 시간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을 충족하면 검진대상이 됨

Q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대상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 야간작업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직종은?
-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야간작업 근로자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야간작업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 야간작업 범위(감시단속적 작업, 사우나 업종도 해당이 되는지, 제조업체만 해당이 되는지)

☞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시간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시간에 해당되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Q2)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 마무리를 위해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 야간작업을 회사 스케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업무 마무리 등을 이유로 야간작업을 연 48회, 연 720시간 이상 수행하였을 경우도 해당되는지?

☞ 근로자 스스로 업무 마무리를 위해 야간작업을 하였더라도 업무와 연관하여 지속적으로 야간작업을 한 시간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시간에 해당된다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 야간작업(2종)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별표 12의2]

-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Q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 야간작업: 몇시간 이상, 월 몇회, 몇시부터 몇시가 야간작업인요?
-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야간작업 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야간작업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야간작업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근무시간, 교대주기(일, 주, 월 또는 몇 개월 단위일 경우) 및 월 2~3일 작업 등))
- 야간작업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2교대 등 작업을 주 야 순환하는 경우에도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 평소에는 주간 근무하다가 어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야간작업을 하는데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시간에 해당되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① 6개월간 작업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6개월간 24회이상, 12개월간 48회이상)
- ②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6개월간 360시간이상, 12개월간 720시간이상)

Q4) 불규칙한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적용 관련 질의①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작업 실시

(단위: 회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갑	4	6	3	5	4	2	4	4	4	4	5	7	52
을	3	5	4	6	2	3	4	3	7	6	3	6	52

- 상기 도표에서 예1)과 예2) 모두 야간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 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 갑의 경우 6개월간(1~6월) 작업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6개월간 24회이상) 수행하였으므로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을의 경우에는 1~6월까지 작업한 시간이 23회로 건강진단 대상 시간이 부족하나, 7월(2~7월)에는 6개월간 누적횟수가 24회가 되므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대상이 됩니다.
- 불규칙적인 경우 누적된 야간작업시간을 토대로 건강진단대상을 판단하게 되므로 건강진단 시기는 “야간작업 대상을 확인한 달로부터 다음 달이내” 실시토록 합니다.

Q5) 불규칙한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적용 관련 질의②

- 업무특성상 연간 1~2개월만 월 평균 60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연간 720시간 미만인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 업무특성상 연간 1~2개월만 1개월에 4회 이상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연간 48회 미만인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 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자가 작업에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간 근무한 야간작업 시간을 토대로 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해당 업무 특성상 연간 1~2개월만 야간작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작업 배치한 날로부터 6개월간 누적된 야간작업 시간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4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배치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한 이후 1년간 누적된 야간 작업 시간이 720시간 또는 48회이상 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습니다.

Q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적용 관련 질의③

- 특점의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의 정의에서 야간작업 시간의 범위에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연의 업무(배달, 조리 등)를 위한 대기, 준비 시간 등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지
※ 전형적인 제조업이 아닌 그 밖의 업종(음식및요식업, 건설업, 경비업(?) 등)에서 해석의 논란예상

☞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감시작업이나 대기, 준비 등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해당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 포함하게 됩니다.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시행규칙 제98조 및 제99조, 별표 12의 3]

- 배치전
- 배치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 주기*: 12개월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Q7)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배치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채용이 거부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리하지 않나요?

☞ 기존 특수건강진단과 마찬가지로 배치전 건강진단결과 의사가 건강관리 구분 및 업무적합성여부 실시하여 근로자가 야간작업으로 인해 건강상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야간작업 배치시 고위험군) 일부 제한될 수도 있으나

- 이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영향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배치전 건강진단결과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더라도 업무적합성 평가시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야간작업 배치시 고위험군 》

- ① 간질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근로자
- ②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또는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자
- ③ 스테로이드치료에 의존하는 천식 환자
- ④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 ⑤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 ⑥ 교대작업으로 인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환자(예: 기관지 확장제 치료 근로자)
- ⑦ 반복성 위궤양 환자
- ⑧ 증상이 심한 과민성 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 ⑨ 만성 우울증 환자
- ⑩ 교대제 부적응 경력이 있는 근로자

▶ 출처: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KOSHA GUIDE H-22-2011)

Q8) 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 적용관련 질의

-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일 경우 배치전 검진 시기를 언제로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처음 배치시에는 특수검진 대상 기준인 야간작업이 아닌 불규칙 야간작업이었으나 6개월 이후 확인해보니 특수검진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한시적으로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기타 유해인자인 경우 정기적으로 노출되지 않더라도 노출되는 경우에는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기존 유해인자인 경우 배치전 검진 대상자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나 야간작업의 경우 시간, 회수 개념을 적용하므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됨, 따라서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 검진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야간작업이 불규칙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 가능한 경우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업무가 불규칙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간 업무를 한 후에 대상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치전 건강진단이 아닌 배치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Q9) 6개월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배치전 건강진단 적용관련 질의

-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여 6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개월에 4회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 또는 6개월 미만에서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의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요?

☞ 해당 업무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단기간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업무가 불규칙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를 6개월 근무 후 판단할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10)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다른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 관련 질의

-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야간작업 근로자는 취급물질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받는 것인가요?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시 다른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 주기와 중복될 경우에는 동시에 실시가능합니다.

Q1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 관련 질의

- 당해 연도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나요?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 중 임상검사는 일반건강진단항목과 중복되므로 일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 만약 해당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대상(위암, 유방암)인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Q12) 기존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적용관련 질의

○ 기존 야간작업자들의 경우 야간작업 건강진단 주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최초의 진단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과 중복되는 항목이 많아 당해년도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경과규정을 둠

- 시행일 이후 부터는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배치하려는 경우 배치전, 배치후 첫 번째(6개월 이내), 12개월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행시기>

Q1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언제 시행관련 질의

○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은 언제 시행되나요?

○ 야간작업은 특수건강진단은 언제까지 시행하여야 하나요?

☞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 3년에 걸쳐 전사업장으로 적용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 규모별 적용 기준은 단위사업장으로 적용함

-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Q1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관련 규모별 적용 질의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시행일이 규모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사업장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건강진단 대상인원(약 130만명(노동패널조사 기준)) 및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규모별 적용 기준은 **단위사업장**으로 합니다. “단위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적용토록 합니다.

Q15)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5인미만 적용 관련 질의

- 야간근로자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3차년도에는 1-50인 고용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소속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 특수건강진단은 규모와 상관없이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기존 특수건강진단에서 대상유해인자가 추가된 것으로 2016.1.1일 이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면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특검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견 근로자>

Q16) 파견근로자에 대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책임 관련 질의

- 파견근로자의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 중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 파견법 제35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검사항목>

- 야간작업 관련 주요 건강문제인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소화기 질환, 유방암을 대상질환으로 하고,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설정
- 질환별 검사항목은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③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위장관계: 위내시경 ④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밑줄친 부분은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임

Q17)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관련 질의①

- 특수검진 항목: 혈액검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병원에서 요구함)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시 진단항목은 무엇인가요?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은?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은 시행규칙 제100조 제4항, 별표 13 (라. 야간작업)과 같습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인 경우 1차 검사항목은 모두 실시하며, 2차 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합니다.
- 또한 2차 검사항목 중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위내시경’, ‘유방촬영’ 및 ‘유방초음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제4조 제2항관련 별표2 참조

Q18)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관련 질의②

-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일부 중복되는데 당해연도에 일반건강진단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
- 향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검사만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건강진단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나, 기실시한 일반건강진단결과를 활용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시 나머지 검사항목만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 혈액검사의 경우 검사시기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과거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그대로 판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일반건강진단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각각 실시할 경우 해당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여야 합니다.

Q19)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관련 질의③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중 위암과 유방암 대상인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서 위내시경이나 유방초음파를 해야 하나요?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서 위장관증상과 유방암 의심증상이 있어 위내시경이나 유방촬영 혹은 유방초음파 검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에서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해당 검사를 실시한 경우 특수건강진단에서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를 토대로 특수건강진단의 판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특수건강진단에서 해당 검사의 대상이 되고, 아직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특수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을 함께 시행하고 국가암검진 결과를 특수건강진단의 판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기관>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실시하여야 함

Q20)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관련 질의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은 어떤 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야간작업의 빈도 및 형태, 업무의 내용, 노동강도 등을 포함한 직업력 및 노출력을 조사하고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Q2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관련 질의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도 기관 검진한계에 포함되나요?
-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야간작업 근로자가 진단기관내 의사의 검진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검진한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야간작업은 기존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특수건강진단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검진한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야간작업” 특검은 특수건강진단 검진한계에 포함되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도입 검토시 사전조사에서 야간작업으로 인해 특검 대상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현재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어 일시적으로 검진한계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진단 사후관리>

Q22)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판정 및 사후관리

-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결과 판정은?
- 야간근로자 특수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현행과 같이 정상(A), 질병 요관찰자(C), 질병 유소견자(D)로 구분합니다. 다만, 야간작업에 의한 건강영향은 ‘개인적 요인’과 ‘업무상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므로 직업병(C₁,D₁)과 일반질병(C₂,D₂) 구분은 하지 않고 C_N, D_N으로 명명합니다.(야간(Night)작업)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는 기존 특수건강진단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야간작업 특성을 반영한 사후관리조치 내용을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사업주는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 사업주는 작업장소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 사후관리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만일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 의(의사인 보건관리를 포함)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벌칙>

Q2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위반시 벌칙 관련 질의

- 사업주가 야간작업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야간작업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은 무엇인가요?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관련 법 위반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 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

1 근로자 건강진단 업무편람

1. 의 의

- 근로자들은 작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업성질환 발생 위험에 직면하게 됨
- 이에 따라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질환을 초기단계에서 찾아내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법 제43조)
 - ※ 법 제43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종류로는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5종류)이 있음(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실시시기 및 대상

< 근로자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

구 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일반부서	유해부서
작업에 배치하기 전			배치전건강진단
다른작업으로 배치를 전환할 때			배치전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개월·1년·2년)
직업병 의심 증상·소견 호소시			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 장의 명령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퇴직 후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1년)

(註) 유해부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부서 또는 업무

가. 일반건강진단(시행규칙 제98조제1호 및 제99조제1항)

-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99조제1항 및 제6항)
 - ※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중복되는 검사항목에 한함)

나. 특수건강진단(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및 제99조제2항)

-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는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는 임금대장 또는 출퇴근카드 등을 토대로 결정)
 -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강진단: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건강진단(광물성 분진),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해당 유해인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 시행규칙 제98조제2호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며,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와 관련되는 유해인자 177종을 규정하고 있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제98조제2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분류	종류
1	유기화합물	화학적 인자	108종
2	금속류	화학적 인자	19종
3	산 및 알칼리류	화학적 인자	8종
4	가스상태 물질류	화학적 인자	14종
5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화학적 인자	13종
6	금속가공유	화학적 인자	1종
7	분진	분진	6종
8	물리적 인자	물리적 인자	8종
9	야간작업	야간작업	2종
			179종

○ 실시시기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시행규칙 제9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먼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실시주기 일시 단축(시행규칙 제99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1/2로 단축하여야 함

①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②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③ 특수 또는 임시건강진단 실시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다. 배치전 건강진단(시행규칙 제98조제3호 및 제99조제4항)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 면제대상(시행규칙 제99조제4항 단서)

-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 배치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해당 유해인자에 한함),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라. 수시건강진단(시행규칙 제98조제4호 및 제99조제5항)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

- 실시시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제3조
 -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한 경우
 -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 면제대상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제3조
 -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건의 또는 요청 받았으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실시가 필요치 않다는 자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임시건강진단(법 제4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8조제5호)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밖에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 ②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건강진단 종류별 실시기관·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가. 일반건강진단

- 실시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시행규칙 제98조의3제2항)
- 검사항목(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 ① 과거병력·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 ②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 ③ 체중·시력 및 청력
- ④ 흉부방사선 간접 촬영
- ⑤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 실시방법

-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함(시행규칙 제100조제3항,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4조)

나.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

○ 실시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시행규칙 제98조의3제1항)

○ 검사항목: 제1차검사항목과 제2차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유해인자별 세부검사항목은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제100조제4항)

○ 실시방법(시행규칙 제100조제5항 및 제6항)

- 제1차 검사항목은 해당 건강진단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차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 2차 검사항목 실시기준(고시 제5조의2)

-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2차 검사항목을 실시하되 일부 항목(고시 별표 1)의 의심되는 질병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직업성 질환이나 소견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상소견의 원인 및 상태를 확인하는 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임시건강진단

- 실시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 검사항목: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시행규칙 제100조제7항)

4. 건강진단 비용

- 근로자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름(시행규칙 제101조)

5. 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시행규칙 제105조)

가.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근로자·공단에 결과 송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보고

- 근로자에 대한 송부: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 공단에 대한 송부: 특수·수시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매분기 1회 공단에 송부하여야 함(고시 제16조)
- 사업주에 대한 송부: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결과표(실시현황, 사후관리소견서)를 송부(시행규칙 제105조제3항)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5조제5항)
 -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자료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시행규칙 제105조제5항 단서)
-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 결과표(시행규칙 별지 제22호(1)서식)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05조제6항)

6. 사업주의 의무

가. 건강진단 실시(법 제43조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나. 근로자대표 입회(법 제43조제1항)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다. 임시건강진단 실시 명령 이행(법 제43조제2항)

-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령한 경우 이 명령에 따라야 함

라. 건강진단결과 조치이행(법 제43조제5항)

- 사업주는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설명회 개최(법 제43조제6항)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
-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바. 목적 외 사용금지(법 제43조제7항)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사.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명시(시행규칙 제99조의4)

-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분명히 밝히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아. 건강진단결과의 보존(법 제64조제1항, 시행규칙 제107조)

-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5년간 보존
-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30년간 보존
- 그 밖의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3년간 보존

7.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음 (법 제43조제3항)

8.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지정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자(시행규칙 제102조)

나. 지정절차

(1) 신청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①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②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③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정도관리)결과 적합판정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함)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3조제3항)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지역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업무제한이 없으므로 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됨

(2) 처 리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3조제3항)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3조제2항)

※ 의사 수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연 실시인원 한계를 명시(지정조건)

다. 행정처분

-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처분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별표20)으로 정함(법 제43조제11항)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이 경우 지정취소)

- ②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③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④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시행령 제32조의7)

- 건강진단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무자격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특수 건강진단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43조의2제2항)
 -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0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 일반기준은 같게 적용되며,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음

< 행정처분기준 중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개별기준(시행규칙 별표 20) >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더.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제1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건강진단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 검사항목을 빠뜨린 경우 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7)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경우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9) 무자격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찰·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별표 14제1호가목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진찰·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가)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나)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경우 11)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기피한 경우 12)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해당 검사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라. 정도관리 및 평가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법 제43조제9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법 제43조제10항,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

※ 평가 기준

- ① 건강진단·분석능력
- ② 건강진단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 ③ 시설·장비의 성능
- ④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내용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 (고시 제 2011-54호) 참조

9.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 지원업무 등을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03조의3)

10. 위반에 대한 조치

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 위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과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부과

나.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 위반)

-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과

다. 특정근로자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 위반)

-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조치 병과

라.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3항 위반)

-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과(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마.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3조제4항 위반)

-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및 행정조치 병과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300만원) 및 행정조치 병과

바. 건강진단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 불이행한 경우(법 제43조제5항 위반)

- 직업병 유소견자(D₁) 및 일반질병 유소견자(D₂)에 대한 조치 위반 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일반질병 유소견자(D₂)에 대한 위반사항의 범죄인지는 2013년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

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6항 위반)

-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과(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아.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3조제7항 위반)

-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과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9호)

제정 1992. 4. 2. 노동부고시 제92- 9호
개정 1994. 8. 4. 노동부고시 제94-38호
개정 1998. 1. 3. 노동부고시 제97-63호
개정 1999.11.29. 노동부고시 제99-29호
개정 2001. 8. 3. 노동부고시 제2001- 45호
개정 2006. 1.18. 노동부고시 제2006- 1호
개정 2008. 3.14 노동부고시 제2008- 17호
개정 2008.12.31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 38호
개정 2012. 4.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45호
개정 2013.10.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62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건강진단 지원·보조”란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규칙 제107조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 가.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나.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제2장 건강진단의 실시

제1절 실시 대상·시기 및 검사항목

제3조(수시건강진단 실시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규칙 제9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보건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한 경우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 또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 실시의 건의·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 자문결과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2차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등) ① 규칙 제100조제3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은 별표 1에서 각 질환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으로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하

여 실시한다.

② 규칙 제100조제6항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제2차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은 의심되는 질병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구분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2차 검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차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직업성 질환이나 소견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차 검사항목 중 제1차 검사결과 신체기관의 이상소견의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검사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규칙 제10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전회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나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근로자
2. 최근 1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3. 문진이나 병력·진찰 등의 소견에서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병의 소견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5조(제2차 건강진단 대상의 통보 등) ①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00조제3항 및 제100조제6항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예외)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6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강진단의 동시실시)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규칙 제105조제2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와 근로시간(야간근로 등을 포함한다), 작업방식(교대제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근무환경 정보
2.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결과표
3.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판단에 필요한 근로자 면담

제2절 검사방법 등

제9조(검사방법 등) ① 규칙 제10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별 검사결과에 대한 참고 값 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근로자 건강진단실무지침에 따른다.

② 규칙 제100조제2항에 따른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의 구체적 실시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흉부방사선 검사) ① 규칙 제100조제1항제4호의 흉부방사선 검사는 가로, 세로 각각 14인치 이상의 필름 또는 디지털 영상에 의한 방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00조제4항 및 별표 1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흉부방사선 검사는 직접촬영 검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사선 필름에는 촬영연월일, 회사명(약자를 포함한다) 및 회사별 근로자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촬영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성명, 성별 및 나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의 판독) 흉부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의에게 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연간 판독한 직접촬영 방사선 필름 및 영상이 평균 3만5천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2.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진폐정도관리를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제12조(치과검사)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치과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과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불화수소
2. 염소
3. 염화수소
4. 질산
5. 황산
6. 아황산가스
7. 황화수소
8. 고기압

② 치과검사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등) ①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98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결과는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관리구분·사후 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①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14호)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 이상인 자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9호)에서 정한 산업의학 실무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레지던트에게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기록지'에 수행한 특수건강진단 사업장·근로자명, 건강진단 실시·판정 과정에서 지도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레지던트가 수행한 특수건강진단 피검자는 규칙 제103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에 포함된다.

제15조(건강진단결과의 보존)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진단결과의 송부) ①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05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1차 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진단개인표 및 건강진단결과표의 전산입력·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개인정보의 보호)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이 제출한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의 개인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절 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

제18조(건강진단시기 및 항목) ① 수첩소지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2. 규칙 별표 14의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3. 규칙 별표 14의2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4. 규칙 별표 14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8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5. 규칙 별표 14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1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6. 규칙 별표 14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1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7. 규칙 별표 14의2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나”목
중 연번 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8. 규칙 별표 14의2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1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9. 규칙 별표 14의2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18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0. 규칙 별표 14의2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1. 규칙 별표 14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2. 규칙 별표 14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3. 규칙 별표 14의2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4. 규칙 별표 14의2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9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② 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개인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특수·배치 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를 준용한다.

③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건강진단 실시결과와 통보) 건강진단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첩소지자 및 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제20조(사후관리 조치)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 4.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2항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건강진단 지원·보조

제21조(정부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45조의4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규칙 제98조에서 정하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2. 건설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제1항의 건강진단지원·보조사업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10월 15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전부개정 2013.10.18>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제4조 관련)

번호	질 환 구 분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
1	폐결핵 및 비결핵성 흉부질환	가.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검사 나. 결핵균 농축도말 검사
2	순환기계질환	가. 혈압 검사 나. 정밀안저 검사 다. 심전도 검사 라.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마. 총콜레스테롤 검사 바. H.D.L-콜레스테롤 검사
3.	간장질환	가. 총단백 검사 나. 혈청알부민 검사 다. 총빌리루빈 검사 라. 알칼리포스파타제 검사 마. 혈청지오티 검사 바. 혈청지피티 검사 사. 감마지티피 검사 아. B형간염 검사 1) 표면항원 검사 2) 표면항체 검사 자. 알파피토단백 검사
4	신장질환	가. 요침사현미경 검사 나. 요소질소 검사 다. 요단백 검사 라. 크레아티닌 검사
5	빈혈증질환	가. 혈색소 검사 나. 백혈구수 검사 다. 적혈구수 검사 라. 혈청철 검사 마. 철결합능(T.I.B.C) 검사
6	당뇨질환	가. 혈당 검사 나. 요당 검사 다. 당화혈색소(HbA ₁ C) 검사
7	피부질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8	그 밖의 질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별 표 2】

특수·배치전·수시 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제4조제2항 관련)

신체기관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간담도계	알파휘토단백, 초음파 검사,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뇨기계	비뇨기과진료, 전립선특이항원(남), 베타2마이크로글로불린
신경계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눈·피부· 비강·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접포시험,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후두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검사, 안과진찰
이비인후	종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u>순환기계</u>	<u>24시간 혈압, 24시간 심전도</u>
<u>내분비계</u>	<u>유방촬영, 유방초음파</u>
<u>위장관계</u>	<u>위내시경</u>

【별표 3】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중 실시대상 근로자(제9조제2항 관련)

구분	검사항목	실시대상 근로자
1	혈당 검사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
2	총콜레스테롤 검사	가.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을 받은 근로자 나.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mmHg 또는 95mmHg 이상 초과한 근로자
3	감마지 · 티 · 피 검사	35세 이상인 근로자

【별표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제13조제1항 관련)

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 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 ₁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 ₂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1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 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 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1의 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_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 _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1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 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 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2. 사후관리조치 판정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 ⁽¹⁾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²⁾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3	추적검사 ⁽³⁾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6	작업전환()
7	근로제한 및 금지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⁴⁾
9	기타 ⁽⁵⁾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C_i), 직업병 유소견자(D_i)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C_N), “야간작업” 유 소견자(D_N)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 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D_i)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 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 술

3.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 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애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전송	/ 전자우편
담당부서	/ 부서장	/ 담당		

[illegible]

1.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u>생년월일</u>		성별	(남, 여)
연령					
세					
2. 작업공정 현황(근무부서, 작업공정, 작업실태)					
3. 작업환경 및 유해인자					
4. 사유 (호소 증상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건의·요청자 소 속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전송	/ 전자우편
담당부서	/ 부서장	/ 담당		

수시건강진단 필요성 자문결과서

[illegible]

받 음 : 대표 귀하

주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5항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3조에 따라 수시건강진단 필요성 자문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 1. 의뢰내용

- ## 2. 검토결과

- ### 3. 자문결과

기관명

면허번호

성명

(인)

※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		

☐ 특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

시행일자 : 년 월 일

문서번호 :

대표 귀하

받 음 :

주 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항·제6항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에 따라 ☐ 특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성별	연령	근무부서	유해인자명	필요한 검사항목	사유

○ ○ ○ ○ 기 관 장 (인)

※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특급) 70g/m²)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

<p>1. 치아검사결과(부식증, 교모증)</p> <p>□□□□□□□□□□□□□□</p> <p>□□□□□□□□□□□□□□</p> <p>7 6 5 4 3 2 1 1 2 3 4 5 6 7</p>	<p>2. 치주조직검사결과</p> <p>□□□□</p> <p>□□□□</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치아상태 :</p> <p>E0 : 정상 T0 : 정상</p> <p>E1 : 법랑질표면부식 T1 : 법랑질파괴</p> <p>E2 : 법랑질파괴부식 T2 : 상아질파괴</p> <p>E3 : 상아질파괴부식 T3 : 교두의 완전파괴</p> <p>E4 : 2차상아질파괴부식 T4 : 치관치근경계부까지</p> <p>E5 : 치주노출부식 파괴</p> </div> <div style="width: 45%;"> <p>치주상태 :</p> <p>0 : 정상</p> <p>1 : 출혈</p> <p>2 : 치석형성</p> <p>3 : 전치주낭형성</p> <p>4 : 심치주낭형성</p> <p>5 : 기타()</p> </div> </div>	

검사일시		검사기관		치과 의사	면허번호: <div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height: 20px; margin-top: 5px;"></div>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 배치전

☐ 특수

☐ 수시

☐ 임시

주민등록번호		이 름		나 이		만 세		성 별		사원번호	
근로자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체 명				업 종							
현작업부서				현작업내용				지 방 사 무 소			
입사년월일		현직전입일		폭 로 기 간		1일폭로시간					
과 거 직 력	작업 공정명		근무년수	기 간	문 진	과거병력			진 찰	신경계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진동장애 등	
						가 족 력					
						업무기인성 흡연,음주					
취 급 물 질											
현재증상											
항목	신장 (Cm)	체중 (Kg)	혈압 (mmHg)*		홍부방사선검사(촬영번호: 번) 판독의사면허번호()						
			최고	최저							
참고치			139이하	89이하							
()년도											
()년도											
치 과 소 견								치과 의사		인	
건 강 진 단 항 목											
검사항목		검사결과			참고치		()년도		()년도		
판 정	검 진 소 견		사 후 관 리 조 치			업무수행 적합여부			유해인자별 건강구분		
									유해인자 건강구분		
건강진단일자		. . .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의사		(서명 또는 인)	
근 로 자		(서명 또는 인)									

건 강 관 리 구 분		사 후 관 리 내 용		업무수행적합여부(질병유소조건자에 대하여 구분함)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0	필요없음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단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1	건강상담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C ₂	일반질병으로 진단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2	보호구착용	
C _N	질병으로 진단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3	추적검사	
D 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직업병 유소조건자)	4	근무중치료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D ₂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일반질병 유소조건자)	5	근로시간 단축	
D _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유소조건자)	6	작업전환	○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애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R	건강진단 1차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7	근로금지 및 제한	
		8	직업병확진의뢰안내 (건강진단기관이 안내)	
		9	기타	

※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분류함.

2. 건강관리상 참고사항

유해요인	인 체 에 미 치 는 영 향	예 방 방
유 기 화합물	눈, 피부, 호흡기 점막의 자극 증상 농도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마취/전 증상이 나타난다. 즉, 아저러움, 두통, 도취감, 흥분, 피로, 졸음, 구역, 자칫하면 상부 호흡통에 이어 흡수농도가 증가 되면 잠재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만성 피로 시에는 감각 혹은 운동 기능 이상 기어올라, 피로, 신경질, 불안 등의 신경계통의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통은 필요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마개 혹은 뚜껑으로 막아 놓는다. 작업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세면을 한다. -인체에 유기용제 중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유해하며,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및 작업복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수은	-식욕부진, 두통, 정신과적 경향, 몸 떨림, 불안, 호흡곤란, 화학성 폐렴, 입술부위의 창백, 메스꺼움, 설사, 장강에 증세를 보이고 피부의 알레르기화, 기악상실, 우울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피부흡수를 통해 산성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용기는 반드시 밀폐해 둔다. -송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금속	-여이 체내에 흡수되면 초기에는 피로를 느끼고 장이 잘 안되며 팔 다리의 통 증, 식욕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계속하여 체내에 흡수되는 양이 증가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며, 아랫다리 손발에 힘이 약해지는 증세가 있을 수 있음. -4급알콜은 무산화합물보다 독성이 강하며, 호흡기로 흡수되어 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간과 골수, 신장, 뇌 등에 장애를 준다. -급성중독 초기에는 달리 중추신경계의 증상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노출 수 일 후엔 발한, 흥분, 근육연축, 망상, 환상이 일어나고 말려져, 체질하여, 맥박수가 감소한다.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고 흡연 과음을 삼가며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함. -개인위생식사전 세수, 방독마스크 착용, 작업복 세탁 등을 철저히 하고 근본적으로 납이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화장품을 금한다. -누설이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점검한다. -작업은 과로 실시(일 노출시간을 기금적 단축한다). -송마스크 또는 유기기용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등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카 드 뮌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신장장애,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폐기종을 일으켜 골격계장애와 심혈관계 장애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침, 기침, 콧물, 호흡기 이상, 식욕부진, 구토, 설사,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고 나사 송곳, 치면부에 의한 황색의 황색색소침착을 볼 수 있다.	-작업상의 공중 카드뮴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 작업장을 청결하게 한다. -작업장 내에서 식사나 흡연은 절대 금하며 작업복은 자주 갈아입는다. -적절한 보호구(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등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망간	-수면장애, 행동이상, 신경증상 발음부정확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오 산 바 나뮴	-눈물이나 눈, 비염, 인두염, 기관지염, 천식, 흉통, 폐렴, 폐부종, 피부습진 등	-환기를 철저히 한다. -작업장치를 철저히 지킨다.
니켈	-폐암, 비강암, 눈의 자극증상, 발한, 메스꺼움, 아저러움, 경련, 정신과적 등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산 및 알칼리류	-심한 호흡기 자극으로 일시적으로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난다. -피부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장기 노출 시에는 자부식성 및 가연성 등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수된 보호의, 고무장갑, 보호면을 착용하여 피부접촉을 방지한다. -보호용 안경을 착용한다.
가스상 물질류	-대부분 가스상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들어와 간접적해를 일으키며 이외에도 피부나 경구적으로도 침입할 수 있는 물질이 많고 일반적으로 신경 장애(마취작용), 피부염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에 노출되면 눈, 코, 목, 피부 및 점막 등을 자극한다.	-화에 주의한다. -작업장에서 발생한 가스 흡, 분진 등은 유해가스용 방독마스크, 보호의, 장갑 등을 착용하고 필요 시, 세수, 샤워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킨다. -유해물 등이 저장장소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 관리한다.
영 제 30 조 예 의 한 료 대 상 물질	-만성적으로는 식변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침, 당 등 기관지염 증상을 수반하고 호흡곤란, 삼개항진 등을 호소하며, 폐암 및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기관지염, 폐염, 접촉성 피부염, 기침, 호흡곤란, 폐의 위축증 형성 -접촉성 피부염, 비중적 점막의 과사, 다발성신경염 등	-방독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한다. -작업 후 목욕을 실시한다. -작업복은 작업 시에만 착용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갈아 입는다. -식면취급 근로자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한다.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환기를 철저히 한다. -작업장치를 철저히 지킨다. -호흡기 질환, 신경질환, 간염, 신장염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2 분진	-광물성분산 진폐증의 자타각증상이나 소견은 호흡기계에서 비롯된 호흡 곤란, 기침, 담액이다. 흉통, 혈담,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면분자 특장적인 자각증상인 일요일증(Monday disease)은 흡부병반, 가슴통증, 호흡곤란, 기침 등인데 특히 일요일에 심하며 주말에 이를수록 점차 경하여 잔(일요일에는 면분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발전 공장의 습식 및 분진 억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발전원 포의 격리 및 밀폐 등을 실시한다. -방독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3 소음	-불쾌감, 정신피로를 발생시켜서 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작업능률을 저하, 청각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청각장애는 일시적인 내청이 경우와 영구적으로 오는 내청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영구적인 내청(작업장)은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때 회복되지 않는 내청의 일종이며, 내청은 말소기까지도 침범 당하여 잘 듣지 못한다.	-소음방지 큰 기계, 기구를 교체하거나 작사한다. -발생원에 대한 방음음시설 설치(간막이 등) 등을 한다. -작업 시에는 귀마개, 귀덮개 등 차음보호구 착용을 생활화 한다.
물리 진동	-근신동기 직접 수직에 가하여서 수반 현상 및 관절에 기계적 공진현상을 일으켜 말초장애를 유발하며 중추, 말초, 골관절 장애를 일으킨다. 즉 손가락의 청각현상, 손가락의 감각이상, 두통, 감각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진동흡수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공구의 보수관리를 철저히 한다. -작업시간을 단축한다.
자외선	-피부의 홍반현상 색소침착, 각질의 부종과 과사, 피부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용접 시에 발생하는 자외선은 각막결막염과 노출된 피부에 장애를 일으키며, 불활성가스 또는 금속 아크용접 등은 강력한 자외선을 발생하며 눈 및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일이 많다.	-유해광선 장애를 예방하는 근본안전은 방사전 발광의 격리, 산선선 차단장치 등 방사전의 피폭장치가 있어 필름배지(film badge) 또는 포켓선계로 피폭량을 측정한다. -피부보호의 보호안경, 보호장갑, 안전면(방열용)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이상 기압	-고압에서는 가스가 혈액 속에 용해되어 있다가 급격한 감압으로 특히 질소가 혈관과 조직 내에 기포를 형성하고 혈관이 막힌 부위에 따라 피부의 가려움 및 근육통, 관절통, 호흡곤란, 사력장애, 반신불수 등을 일으킨다.	-수심에 따른 체내시간의 한도와 적절한 감압법을 엄수하여야 한다. -고압 환경에 부적절한 고령자, 결핵환자 등의 만성호흡기 질환자, 심판계 이상자, 만성부비강염, 중이염, 골관절 이상자 등은 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야간작업	-야간작업은 뇌시절관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생체리듬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소화, 정제장애와 같은 위장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방암과의 관련으로 인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A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뇌시절관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요법을 실천한다. -고압 근무 일정을 바람직한 형태로 설계하며, 필요시 야간작업 중에 수면시간을 제공한다. -직업관질환, 중추신경장애, 조혈기계질환, 생식기계 기능이상 등이 있는 경우 야간작업 배치 전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사 업 장 명		업 종 분 류		현 작업부서명		현부서 근무개월 수	개월
사업장 주소				과 거 직 력		전 화 번 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 여	사 원 번 호	
근로자 주소				입 사 년 월 일	년 월 일	직 종 구 분	☐ 사무직 / ☐ 기타 근로자

1차 건강진단	구분 참고치	체 위 검 사								소 변 검 사				
		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좌/우)		청력		혈압		요당백	요단백	요장혈	요pH
					맨눈	교정	좌	우	수축기	이완기				
	정상 범위			110 미만					139 미만	89 미만	음성	음성	음성	5.5-7.5
	결과	년 월			/	/								
		년 월			/	/								
		검사성적	cm	kg	%	/	/			mmHg	mmHg			
	구분 참고치	혈 액 검 사							B 형 간 염 검 사		흉 부 방 사 선 검 사			
		혈구 용적치	혈색소	혈당 (식전)	총콜레스테롤	혈청 지오티	혈청 지피티	감마 지티피	표면 항원	표면 항체	검사 결과	촬영구분	☐ 간접촬영/ ☐ 직접촬영	
												촬영번호		
	정상 범위	남:41-53 여:36-47	남:13.0-16.5 여:12.0-15.5	70-110	230 이하	40 이하	35 이하	남:11-63 여: 8-35	음성	음성 / 양성	면역자	정상 / 비활동성 폐결핵		
	결과	년 월												
		년 월												
검사성적		%	g / ℓ	mg / ℓ	mg / ℓ	U / ℓ	U / ℓ	U / ℓ						
임 상 진 찰							1 차 건 강 진 단 판 정							
과거병력							1차 소견							
생활습관							사후관리 조치							
증상소견							건강관리구분				건강진단 의사	면허번호		
							1차 판정일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차 건강진단	구분 참고치	순 환 기 계 질 환								당 뇨 질 환 검 사								
		고 혈 압				고 지 혈 증				요당	요당		HbA _{1c}	정밀안 저검사				
		혈압		정밀안 저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식전		식후							
		최고	최저															
	정상 범위	139 이하	89 이하	정상	정상	230 이하	남:30-70 여:35-80	40-200		70-110	120 이하		정상					
	결과	년 월																
		년 월																
		검사성적	mmHg	mmHg			mg / ℓ	mg / ℓ	mg / ℓ			mg / dℓ	mg / dℓ	mg / dℓ				
	구분 참고치	간 장 질 환																
		간 기 능 검 사														B 형 간 염 검 사		
		알부민	총단백	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제	유산탈수효소	알파휘토단백	혈청 지오티	혈청 지피티	감마 지티피	표면항원	표면항체	검사결과				
				총	직접													
	정상 범위	3.5-5.0	6.0-8.0	0.2-1.2	0.50이하	30-115		음성	40 이하	35 이하	남:11-63 여: 8-35	음성	음성 / 양성	면역자				
	결과	년 월																
		년 월																
		검사성적	g / dℓ	g / dℓ	mg / dℓ	mg / dℓ	U / ℓ	U / ℓ	U / ℓ	U / ℓ	U / ℓ							
	구분 참고치	신 장 질 환							빈 혈 질 환						피부 질환			
		요침사현미경		요단백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	혈구용적치	혈색소량	적혈구수	백혈구수	Serum Iron	철결합능(T.I.B.C)					
		적혈구	백혈구															
		정상 범위																
결과	년 월																	
	년 월																	
	검사성적																	
구분 참고치	흉 부 질 환 (직 접 촬 영)					기타 질환	2 차 건 강 진 단 판 정											
	촬영번호						연도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정상 / 비활동성 폐결핵						년 월											
	방사선과 전문의						년 월											
결과	년 월						판정결과											
	년 월																	
	년 월																	
	검사성적																	
		면허번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서명 또는 인)														

건강진단기관명		기관대표자		사업주		보건관리자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건강관리구분및사후관리

건강구분	판 정 기 준	사 후 관 리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사후관리 필요 없음
C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
D ₁	직업성질병의 소견을 보여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요양신청,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및 근무 중 치료
D ₂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 중 치료, 그 밖의 의학적 조치
R	질환 의심 근로자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제2차 건강진단 실시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시)

※ 귀하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질환별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환별	주 의 사 항	질환별	주 의 사 항
폐결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당한 운동, 균형있는 식사로 건강을 증진한다. -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다. - 공해지역 또는 혼탁한 작업환경을 피한다 - 금연한다. - 기침, 미열, 가래 등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다른 호흡기 질환(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을 앓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견시 조기치료 한다. - 치료약의 복용, 치료기간 등을 반드시 지킨다. 	빈혈증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혈의 일상적인 증상(현기증, 창백, 두통, 가슴 두근거림)등의 발생여부에 관심을 두고 이상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자주 출혈이 되는지 멍이 잘 드는지 관찰한다. - 편식하지 않고 철분, 엽산(葉酸) 및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다. - 여성의 경우 주기적 월경, 수유, 분만, 임신 등 철분의 손실 및 요구가 증가되는 때에는 열량이 많은 음식(특히, 철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 기생충 질환에 이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과로는 피한다.
순환기계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방 음식, 단음식을 피한다. - 지방섭취 절제 등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비만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균형있는 영양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금연한다. - 가볍고 적당한 운동을 한다. - 연속적인 긴장이 요구되는 운동을 한다. - 신장질환, 당뇨병의 발병에 유의한다. 	당뇨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음, 과식 삼가고 금연한다. - 당분 섭취를 삼간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은 반드시 준수한다. - 당뇨병상(심한갈증, 뇨량증가물의 다량섭취)의 발생 유무를 관찰하고, 의심되면 진료를 받는다. - 체장염 등의 발견시는 조기치료 한다. - 부모, 형제중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특히 주의한다.
간장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 고단백 음식을 섭취한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금주, 금연한다. - 의사의 지시 이외의 약제복용을 삼간다. - 간에 부담을 주는 한약 및 항생제 등의 남용을 억제한다. - 간염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가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흉부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지, 꽃가루 등이 많은 곳은 피한다. - 독한 화공약품에 주의한다. - 금연한다. - 호흡기 또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육체적인 운동을 피한다. - 운동 후 호흡곤란, 객담, 기침의 이상소견 등이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질환을 악화시킬 과중한 업무 및 공해환경을 피한다. - 만성 폐질환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한다.
신장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뇨, 혈뇨, 뇨량감소 등의 발견시는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 요로감염 등의 염증을 조기치료 한다. - 결핵 및 당뇨병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 - 짠음식을 삼간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신장기능을 저하시키는 한약 및 항생제 등의 남용을 억제한다. 		

흉 부 방 사 선 사 진 판 독 소 견 서

사업장	소재지 (주소)		검진	병 원 명			
	명 칭			촬영연월일	년	월	일
	업 종			촬영 번호	부터	까지	
			기관	총 인원수	명		
촬영번호	분 류	소 견	비 고	촬영번호	분 류	소 견	비 고
판 독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p>분류표 : A : 정상(기록하지 말것)</p> <p>B : 사진불량(요 재촬영)</p> <p>C : 석회화병변 및 비활동성</p> <p>D-A : 폐결핵 경증</p> <p>D-B : 폐결핵 중등증</p> <p>D-C : 폐결핵 중증</p> <p>E : 폐결핵 의증</p> <p>F : 비결핵성 질환(반드시 소견을 기입할 것)</p> <p>G : 진단미정</p> <p>* D-A, D-B, D-C, E, F, G는 직접촬영을 할 것</p> <p>* 사업장의 업종을 반드시 기재할 것</p>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8호 서식)

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현황

의료기관명 :

검진 일자	사 업 장			검진종류별 수진 근로자수										결재	
	명칭	소재지	전화 번호	계	일반	특수		배치전		임시		수시		담당	기 관 장
						유해 인자	인원	유해 인자	인원	유해 인자	인원	유해 인자	인원		

※ 근로자 1인이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검진란에만 인원수를 기재하고 일반검진란에는 “동시실시”라고 기재함

380mm×268mm

3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2012-37호)

제정 1983. 2. 3 노동부예규 제78호
개정 1984.12.27 노동부예규 제108호
개정 1986. 2.27 노동부예규 제124호
개정 1987. 1.28 노동부예규 제134호
개정 1987.12.26 노동부예규 제149호
개정 1989. 2.14 노동부예규 제159호
개정 1990. 1.24 노동부예규 제170호
개정 1991. 3. 6 노동부예규 제189호
개정 1991. 4.20 노동부예규 제196호
개정 1992. 3.26 노동부예규 제208호
개정 1994. 6.30 노동부예규 제243호
개정 1995.10.27 노동부예규 제276호
개정 1997.12.26 노동부예규 제360호
개정 1999.11.24 노동부예규 제434호
개정 2001. 7.28 노동부예규 제465호
개정 2006. 1.10 노동부예규 제520호
개정 2009. 9.25 노동부예규 제602호

전부개정 2012. 8.31 고용노동부예규 제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정도관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강진단업무처리

제3조(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결과 보고에 대한 검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0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적정여부
2. 건강진단의 누락여부(실시대상, 검사항목 등)
3. 질병 유소견자의 발생여부
4.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일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체 개요(명칭,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수, 업종, 작업공정, 주생산물, 최근 3년간 직업병 유소견자의 종류별 발생인원)
2. 유소견자 내역(질병별 유소견자 성명, 연령, 입·퇴사 연월일, 직종, 유해인자, 질병종류, 발병경위, 진단기관, 검사치, 과거병력 및 산재요양·보상경력 등)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령의 준수여부 확인,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지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제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03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및 건강진단 실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등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 사본, 인력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서 사본, 인력현황을 고용노동부의 노사누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제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도관리(분석 정도관리, 진폐정도관리 및 청력정도관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진단 실시지역)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건강진단의 실시를 안내할 때에는 관내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관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내 원거리지역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건강진단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기관을 정하여 검진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건강진단기관의 점검 및 보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정요건, 건강진단의 누락·부실·불공정 행위 등 업무수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부적격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2, 영 제32조의6 및 규칙 제143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된 인력 등 지정사항의 변경내용을 고용노동부의 노사누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때 관내 건강진단기관이 관외 사업장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정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기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장 건강진단 실시지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에 대한 각종 감독을 할 때에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파악하여 건강진단의 미실시, 부실실시 또는 불공정 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등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일반건강진단을 하는 의료기관은 일반건강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진단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건강진단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의료기관은 특수건강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진단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건강진단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①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일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
2. 일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 대책의 자발적 수립·시행
3.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자발적 수립·시행

4. 일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
5. 일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의 개최
- ②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특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
 2. 특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 대책의 자발적 수립·시행
 3.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자발적 수립·시행
 4. 특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
 5.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건강진단 업무지원 및 특수건강진단 종사자 교육
 6. 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의 개최

제5장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

제11조(지정분야 및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대상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지정신청 및 지정 등) 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제11조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신청서의 지정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반려하거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후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2012-37호, 2012.8.31>

이 예규는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